검법연구위원회 규정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본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, 운영하며 검법연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칭함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한국 고유의 검법과 도검에 관하여 검토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에 있다.

제 3 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
1. 전통검술, 검법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
2. 도검의 연구 및 제작에 관한 사항
3. 검도의 본 연구
4. 검법강습 및 대회 계획 수립
5. 기타 검범 및 도검에 관한 사항

제 4 조(조직)
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,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④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5 조(운영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.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.
5.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제 6 조(시행세칙) 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행 세칙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7 조(시행일)

1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(2013. 4. 18.)로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(2014. 3. 26.)로부터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(2019. 1. 22.)로부터 시행한다.